상생일반구매론계약서(구매기업용) 개정대비표

1. 주요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비고
상생일반구매론 계약서 (구매기업용)	**상생일반구매론 계약서** (구매기업용)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삭제)	문구삭제
제1조(목적) ~ 제 2조(용어의 정의) (기재생략)	**제1조(목적) ~ 제 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제 3조(승인명세의 전송) 승인명세의 전송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합니다. **1.~6.** (기재생략) (신설)	**제 3조(승인명세의 전송 등)** 승인명세의 전송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합니다. **1.~6.** (현행과 같음) 7. 구매기업이 결제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납품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어음대체결제수단의 만기일을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에 따른 지연이자 부담의무 반영 및 동법 제2조(정의)의 용어 인용
(신설)	8. 구매기업이 결제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어음대체결제수단의 만기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합니다.	
제4조(지급승인) ~ 제7조(신용공여기간) (기재생략)	**제4조(지급승인) ~ 제7조(신용공여기간)** (현행과 같음)	
제8조(개별대출의 실행) ① (기재생략) 1.~3. (기재생략) 4. 거치기간 없이 만기입금하는 경우 결제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당일만기대출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협력기업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매매보호거래시 구매기업이 권리이전(인수) 등록하지 않은 승인명세에 대해서는 구매기업 명의의 당일만기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제8조(개별대출의 실행)**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거치기간 없이 만기입금하는 경우 결제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당일만기대출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협력기업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매매보호거래시 구매기업이 권리이전(인수) 등록하지 않은 승인명세에 대해서는 구매기업 명의의 당일만기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가. (기재생략) 나. (기재생략) ② (기재생략) ③ (기재생략) ④ (기재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목→항 대체 목→항 대체 체하 체하 체하
제9조(상생벤더구매론에 의한 지급승인) ~ 제11조(대출의 이자) (기재생략)	**제9조(상생벤더구매론에 의한 지급승인) ~ 제11조(대출의 이자)** (현행과 같음)	
제12조(결제계좌의 지정) 구매기업 명의로 실행된 개별대출금의 만기일에 아래의 결제계좌에 해당 금원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하나은행에 개설된 구매기업 본인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제12조(결제계좌의 지정)** 구매기업 명의로 실행된 개별대출금의 만기일에 아래의 결제계좌에 해당 금원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하나은행에 개설된 구매기업 본인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예금주 / **예금주 사업자번호** / **계좌번호** ( ) / ( ) / ( )	**예금주** /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 / ( ) / ( )	문구수정
제13조(개별대출의 상환) ~ 제18조(면책) (기재생략)	**제13조(개별대출의 상환) ~ 제18조(면책)** (현행과 같음)	
제19조(계약의 효력) ①~② (기재생략) ③ 이 계약서, 원 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6편 B2B 상거래정보」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원 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6편 B2B 상거래정보」의 순서로 합니다. ④ (기재생략)	**제19조(계약의 효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계약서, 원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6편 B2B 상거래정보」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원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6편 B2B 상거래정보」의 순서로 하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④ (현행과 같음)	문구수정 (관련 법령 추가)
제20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본점, 지역본부 또는 구매기업의 거래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0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문구수정

제 21조(기타 특약사항) (기재생략)	**제 21조(기타 특약사항)** (현행과 같음)	

2. 개정시행일: 2018년 11월 30일

3.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개정 약관 적용 여부: 적용